

광주지방법원 2022. 7. 19 선고 2021가단5502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, 오민근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

담당변호사 나중헌

변론 종결2022. 6. 14.

판결 선고2022. 7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 사이 체결된 2021. 10. 15.자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 : 광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

- 1) 원고는 (주)D와 2019. 8. 8. 피보험자(주)E, 계약명: 위탁대리점계약, 보험기간 2019. 5. 26.부터 2021. 12. 31.까지, 보험가입금액 200,000,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F, C는 위 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.
- 2)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2020. 1. 16. 보험사고가 발생하자, 원고는 위 피보험자에게 2020. 6. 5. 보험금 167,358,881원을 지급하여,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해 2021. 10. 27. 기준 189,559,585원의 구상금채권을 보유 중이다.

나. F의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

- 1) F은 전라남도 나주시 G아파트 H호(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)를 2014. 5. 9. 매매를 통하여 구입하고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6. 12. 27. 제42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.

이후 F은 C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후 2020. 3. 19. C에게 채권최고액 5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).

- 2)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광주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21. 9. 28. 최고가 440,000,000원에 매각되었다.

다.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

- 1) C는 2021. 10. 15.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확정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에게 C가 근저당권자로서 수령하게 될 배당금 전액에 관한 지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,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배당금전액양도 통지를 하였다.
- 2)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양도대금 7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.

라. 배당표의 작성

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 결과 2021. 11. 25.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38,392,324원의 배당액이 분배될 것으로 정해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C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 평소 경매 및 부실채권(NPL) 투자에 관심을 가지던 중 경매정보사이트인 'J'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경매예정임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,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할 당시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.

2)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106962 판결 등 참조).
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50015 판결,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).

3)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,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할 당시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① 피고는 평소 경매 및 부실채권(NPL) 투자에 관심을 가지던 중 경매정보사이트인 'J'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이 경매 중인 것을 알게 된 이래 2021. 10. 15. 광주지방법원 입찰과정에서 C를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와 C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도 않다.

한편, 경매 및 부실채권(NPL) 투자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분석을 통해 근저당권부 채권이 경매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을 분석한 후 시세차익을 누릴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 등을 양수받아 경매 과정에 참여하여 배당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은 부실채권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투자방법에 속한다.

② 피고는 경매가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경매기록을 열람, 복사한 후 C의 근저당권 채권에 압류가 되거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C가 채무자 F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예금거래조회내역도 확인하였다(을 제3호증).

피고는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2021. 10. 15. C와 채권양도양수 금액을 7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.

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{채권채고액 268,800,000원(5번 근저당권설정등기), 채권최고액 32,500,000원(6번 근저당권설정등기)}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, 체납징세를 위한 국세 압류와 2건의 가압류(청구금액 25,062,359원, 청구금액 166,446,692원) 등이 존재하여 후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배당액이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성도 존재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.

③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C로부터 양수받아 입찰할 당시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거나 그 채권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C에게 7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을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의 선의의 항변을 받아들인 이상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소연

별지